# 작업장 내 이동중 지게차와 충돌 사망

### 재 해 개 요

2013년 7월 30일(화) 22시30분경 OOO사업장 내에서 피재자가 닭 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운반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지게 차와 충돌 후 안전가드와 지게차 사이에 끼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

### 현 장 사 진



<사진 1> 재해발생 작업장 상황



<사진 2> 재해발생당시 재해자와 지게차의 이동경로

### 재해발생 과정

#### ㅇ 재해자 행동상황

- 재해자는 닭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부산물 처리공정으로 운반 후 재해발생지점을 통과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, 지게차 운전자는 냉동창고에 제품을 입고 후 지게차를 후진하기 위해 지게차 후방을 살펴보았으나 90°회전통로 후면에서 이동해오는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재해발생지점으로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피재자를 충돌 후 지게차와 안전가드에 피재자가 끼어 질식 사망함

### 재해발생 워인

#### ㅇ 통로 미설치

-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통로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음

#### ㅇ 접촉의 방지조치 미실시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, 출입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등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접촉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

# 동종재해 예방대책

# ㅇ 통로 설치

-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# ㅇ 접촉의 방지조치 실시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, 출입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등 접촉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